

부속서 8-나
통신 서비스

제1조
정의

이 부속서의 목적상,

- 가. **원가지향**이란 원가에 기초함을 말하며, 합리적인 이윤을 포함할 수 있고, 서로 다른 설비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서로 다른 비용산출 방법을 수반할 수 있다.
- 나. **최종이용자**란 공중 통신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 외의 서비스 공급자를 포함하는 공중 통신망 또는 서비스의 가입자 또는 최종소비자를 말한다.
- 다. **필수 설비**란 다음과 같은 공중 통신망 또는 서비스의 설비를 말한다.
 - 1) 단일의 또는 제한된 수의 공급자에 의하여 배타적 또는 지배적으로 제공되는 것, 그리고
 - 2)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제적 또는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대체할 수 없는 것
- 라. **상호접속**이란 하나의 서비스 공급자의 이용자가 다른 서비스 공급자의 이용자와 통신을 하고 다른 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중 통신망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와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 마. **국제 모바일 로밍 서비스**란 최종이용자가 자신의 본국 공중 통신망이 위치한 영역 밖에서 음성, 데이터 또는 메시지 전송 서비스를 위하여 자신의 본국 모바일 단말기 또는 그 밖의 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중 통신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들 간 상업적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상업적 모바일 서비

스를 말한다.

바. **전용회선**이란 특정 이용자의 전용 사용 또는 이용 가능성을 위하여 따로 둘 이상의 지정된 지점 간 통신 설비를 말한다.

사. **면허**란 어떠한 인이 통신망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당사자가 자신의 법과 규정에 따라 그러한 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양허, 허가 또는 등록을 포함하는 모든 승인을 말한다.¹

아. **지배적 사업자**란 다음의 결과로 공중 통신망 또는 서비스의 관련 시장에서 참가 조건(가격 및 공급에 관한 것)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공중 통신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를 말한다.

1) 필수 설비에 대한 지배, 또는

2) 시장에서의 자신의 지위 이용

자. **비차별적**이란 동종의 상황에서 동종의 공중 통신망 또는 서비스의 그 밖의 이용자에게 부여된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말한다.

차. **번호이동성**이란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 간에 전환할 때 동일한 전화번호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공중 통신 서비스 최종이용자의 능력을 말한다.

카. **물리적 설비 병설**이란 지배적 사업자가 공중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 또는 통제하고 사용하는 구역에서 장비를 설치, 유지 또는 수리하기 위한 공간에 대한 접근을 말한다.

타. **공중 통신망**이란 명시된 망 종단점 간에 공중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 공중 통신 기반을 말한다.

¹ 태국의 경우, 양허는 2022 년까지 "면허"의 정의에서 제외된다.

과. **공중 통신 서비스**란 공중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도록 당사자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또는 사실상 요구되는 모든 통신 서비스를 말한다. 그러한 서비스는 고객의 정보를 형태나 내용 면에서 중단 간 변경 없이 둘 이상의 정해진 지점 사이에서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것을 전형적으로 수반하는 전신, 전화, 텔렉스 및 데이터 전송을 포함할 수 있다.

하. **통신**이란 모든 전자기적 수단에 의한 신호의 전송 및 수신을 말한다.

거. **통신규제기관**이란 당사자의 법과 규정에 따라 통신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 또는 기관들을 말한다. 그리고

너. **이용자**란 공중 통신망 또는 서비스의 최종이용자 또는 공급자를 말한다.

제2조

적용범위

1. 이 부속서는 다음을 포함하여 공중 통신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당사자의 조치에 적용된다.

가. 공중 통신망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 관련된 조치, 그리고

나. 공중 통신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에 관한 의무에 관련된 조치

2. 이 부속서는 케이블 또는 방송 서비스 공급자가 공중 통신망 및 서비스에 접근하고 이용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을 제외하고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케이블 또는 방송 배급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적용되지 않는다.

3. 이 부속서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가. 제8장(서비스 무역)에 따른 당사자의 약속을 제외하고, 그 당사자에게 다른 당사자의 서비스 공급자가 통신망이나 서비스를 설치, 구축, 취득, 임대, 운

영 또는 공급하도록 승인할 것을 요구하는 것, 또는

- 나. 공중에 일반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통신망 또는 서비스를 설치, 구축, 취득, 임대, 운영 또는 공급하도록 당사자에게 요구하거나, 그 관할권 하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할 것을 당사자에게 요구하는 것

제3조

규제에 대한 접근방식

1. 당사자들은 통신 서비스 공급에 폭 넓은 선택권을 부여하고 소비자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경쟁시장의 가치를 인정하며 유효경쟁이 존재하는 경우 규제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당사자들은 규제 필요와 접근방식이 시장마다 다름을 인정하고 각 당사자가 이 부속서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을 결정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2. 이러한 측면에서, 당사자들은 당사자가 다음을 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가. 그 당사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하는 문제에 대한 예측으로 또는 이미 시장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직접 규제에 참여할 수 있다. 또는

나. 특히, 자체 망 설비를 소유하지 않은 통신 서비스 공급자가 공급하는 서비스 처럼 경쟁적이거나 경쟁적일 가능성이 있는, 또는 진입장벽이 낮은 시장 부문에 대해서 시장 원리의 역할에 의존할 수 있다.

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에 따라 규제에 대한 참여를 자제하는 당사자는 계속해서 이 부속서에 따른 의무의 적용대상이 된다.

제4조

접근 및 이용²

²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는 어떠한 당사자가 서비스 공급자에게 자신의 영역에서 공중 통신망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면허를 취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1. 각 당사자는 자신의 영역에서 또는 자신의 국경을 넘어 제공되는 전용회선을 포함하는 공중 통신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시의적절하게 그리고, 특히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통하여,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한 조건으로 다른 당사자의 서비스 공급자가 부여받도록 보장한다.

2. 제5항과 제6항에 따라, 각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다음이 허용되도록 보장한다.

가. 공중 통신망과 상호 연결되고 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단말장치 또는 그 밖의 장비를 구매하거나 임차하고 부착하는 것

나. 전용 또는 소유 회선을 공중 통신망 및 서비스 또는 다른 서비스 공급자의 전용 또는 소유 회선과 접속하는 것,³ 그리고

다. 자신이 선택한 운용규약을 사용하는 것

3. 각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의 서비스 공급자가 그러한 서비스 공급자의 사내통신을 포함하여 자신의 영역에서 또는 자신의 국경을 넘어 정보를 이동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어떠한 당사자의 영역에서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거나 달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위하여, 공중 통신망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메시지의 보안 및 비밀성을 보장하고 공중 통신망 또는 서비스의 최종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의 수단을 구성하거나 서비스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5. 각 당사자는 다음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에는 공중 통신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³ 베트남의 경우, 비영리 목적으로 폐쇄 이용자 집단 구성원 간 음성 및 데이터 통신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하도록 인가된 망들은 통신규제기관에 의하여 서면으로 승인된 경우에만 직접 상호접속을 할 수 있다. 베트남은, 요청이 있는 경우, 승인 거부 사유를 신청인이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베트남은 이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2년 내에 이 서면 승인 취득 요건을 검토한다.

및 이용에 대하여 어떠한 조건도 부과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가. 공중 통신망 및 서비스 공급자의 공공 서비스 책임, 특히 그들의 망 또는 서비스를 대중에게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공급자의 능력을 보호하는 것, 또는

나. 공중 통신망 또는 서비스의 기술적 무결성을 보호하는 것

6. 제5항에 규정된 기준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공중 통신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위한 조건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인터페이스 규약을 포함하여, 공중 통신망 및 서비스 접속을 위하여 특정의 기술적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도록 하는 요건

나. 필요한 경우, 공중 통신망 및 서비스의 상호 운용성을 위한 요건과 제17조 (국제기구와의 관계)에 규정된 목표의 달성을 장려하기 위한 요건

다. 공중 통신망과 상호 연결되는 단말장치 또는 그 밖의 장비에 대한 형식승인과 그러한 장비를 공중 통신망에 부착하는 것과 관련된 기술적 요건

라. 전용 또는 소유 회선을 공중 통신망 또는 서비스, 또는 다른 서비스 공급자의 전용 또는 소유 회선과 접속하는 것에 대한 제한, 또는

마. 통보 및 면허 요건

제5조 번호이동성⁴

⁴ 이 조는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인민민주공화국 및 미얀마에 적용되지 않는다.

각 당사자는 자신의 영역의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가, 기술 및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한 한도에서 시의적절하게 그리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위한 번호이동성을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제6조 경쟁 보장장치

1. 각 당사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지배적 사업자인 공급자가 반경쟁적 관행에 관여하거나 이를 지속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2. 제1항에 언급된 반경쟁적 관행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반경쟁적 교차보조에 관여하는 것

나. 반경쟁적 결과를 수반하며 경쟁자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이용하는 것, 그리고

다. 다른 공중 통신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그 공급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필수설비에 관한 기술적 정보와 상업적으로 관련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하지 않는 것

제7조 지배적 사업자에 의한 대우

각 당사자는 자신의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당사자의 공중 통신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다음에 관하여 그러한 지배적 사업자가 동종의 상황에서 자신의 자회사와 계열사 또는 비계열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하도록 보장한다.

가. 동종의 공중 통신 서비스의 이용 가능성, 공급, 효율 또는 품질, 그리고

나. 상호접속에 필요한 기술적 인터페이스의 이용 가능성

제8조

재판매

각 당사자는 경쟁을 촉진하거나 최종이용자의 장기 이익에 혜택을 주기 위한 필요성에 기초하여, 어떠한 공중 통신 서비스가 지배적 사업자에 의하여 재판매용으로 제공되어야만 하는지를 자신의 법과 규정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지배적 사업자에 의하여 서비스가 재판매용으로 제공되어야만 한다고 당사자가 결정한 경우, 그 당사자는 자신의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그 서비스의 재판매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제9조

상호접속⁵

공중 통신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 관한 의무

1. 각 당사자는 자신의 영역의 공중 통신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다른 당사자의 공중 통신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와의 상호접속을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2. 각 당사자는 자신의 영역의 공중 통신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상호접속 약정의 결과로 획득된 이용자의, 또는 이용자에 관련된, 상업적으로 민감하거나 비밀인 정보를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 외에는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지배적 사업자에 관한 의무

3. 각 당사자는 자신의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당사자의 공중 통신망 및 서비스 공급자의 설비 및 장비를 위한 상호접속을 그 지배적 사업자의 망 내의 기술적으로 실현 가

⁵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부속서에 사용된 "상호접속"이라는 용어는 세분화된 망 요소에 대한 접근을 포함하지 않는다.

능한 모든 지점에서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그러한 상호접속은 다음과 같이 제공된다.

- 가. 비차별적인 조건(기술 표준 및 규격을 포함한다) 및 요율에 따라⁶
- 나. 자신의 동종의 서비스에 대하여, 비계열사 서비스 공급자의 동종의 서비스에 대하여, 또는 자회사나 그 밖의 계열사에 대하여 그 지배적 사업자가 제공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품질로
- 다. 시의적절하게, 그리고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경제적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그리고 다른 당사자의 공중 통신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하여 요구하지 않는 망 요소 또는 설비에 대하여는 지불할 필요가 없도록 충분히 세분화되어 있는, 조건(기술 표준 및 규격을 포함한다)과 원가지향적인 요율로, 그리고
- 라.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추가적인 설비의 구축 비용을 반영하는 요금을 조건으로 다수의 공중 통신망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제공되는 망 종단점에 추가한 지점에서 제공된다.

4. 각 당사자는 자신의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당사자의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에게 그의 설비 및 장비를 그 지배적 사업자의 그것과 상호접속 할 수 있는 기회를 다음 선택사항 중 최소한 하나를 통하여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 가. 당사자의 통신규제기관이 승인한 표준 상호접속 제안 또는 그 지배적 사업자가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에게 일반적으로 제의하는 요율 및 조건을 포함하는 그 밖의 상호접속 제안
- 나. 발효 중인 상호접속 협정의 조건, 또는
- 다. 상업적 교섭을 통한 새로운 상호접속 협정

5. 각 당사자는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을 위한 적용 가능한 절차가 공개적으로

⁶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호접속 요율은 공중 통신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 간 상업적으로 교섭될 수 있다.

이용 가능하게 하도록 보장한다.

6. 각 당사자는 자신의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자신의 상호접속 협정 또는 표준 상호 접속 제안이나 그 밖의 상호접속 제안을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하도록 보장한다.

제10조

전용회선 서비스의 공급 및 가격 책정

각 당사자는 자신의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당사자의 공중 통신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시의적절하게 그리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한 조건과 효율로 공중 통신 서비스인 전용회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제11조

설비 병설

1. 각 당사자는 필수 설비에 대한 지배력을 보유한 자신의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당사자의 공중 통신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상호접속에 필요한 장비의 물리적 설비 병설을 시의적절하게, 그리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한 조건(적용 가능한 경우 기술적 실현 가능성과 공간의 이용 가능성을 포함한다) 및 효율로 허용하도록 보장한다.

2. 물리적 설비 병설이 기술적 이유 또는 공간적 제약으로 인하여 실행 가능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자신의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시의적절하게 그리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한 조건과 효율로 대안적 해결책을 제공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3. 당사자는, 자신의 법과 규정에 따라, 설비 병설이 요구되는 시장의 경쟁 상황 그리고 경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역이 경제적 또는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대체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자신의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구역 중 어떤 구역이 제1항과 제2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2조 독립적인 통신규제기관

1. 각 당사자는 자신의 통신규제기관이 모든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도록 보장한다.
2. 각 당사자는 자신의 통신규제기관의 규제 결정 및 그 기관에 의하여 사용되는 절차가 모든 시장 참여자에 대하여 공평하도록 보장한다.

제13조 보편적 서비스

각 당사자는 자신이 유지하려는 보편적 서비스 의무의 종류를 정의할 권리를 갖는다. 그러한 의무는 그 자체로 반경쟁적인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의무는 투명하고 비차별적이며 경쟁 중립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그 당사자가 정의한 종류의 보편적 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한 것보다 더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

제14조 면허

1. 공중 통신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면허가 요구되는 경우, 당사자는 다음이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가. 자신이 적용하는 모든 면허 기준 및 절차⁷

나. 면허 신청에 관한 결정에 이르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기간, 그리고

다. 면허의 일반적인 조건

⁷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호는 면허 신청 또는 취득 수수료를 포함한다.

2. 당사자는 결정이 내려진 후, 과도한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신청 결과를 통보한다.
3. 당사자는, 요청에 따라, 신청인 또는 면허권자에게 다음에 대한 이유가 제공되도록 보장한다.

가. 면허 거부

나. 면허에 대한 공급자별 조건의 부과

다. 면허 갱신 거절 또는

라. 면허 취소

제15조

희소 자원의 분배 및 이용

1. 각 당사자는 주파수와 번호를 포함하는 통신 관련 희소 자원의 분배 및 이용에 관한 자신의 절차를 객관적이고 시의적절하며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운영한다.

전파

2. 각 당사자는 분배된 주파수 대역의 현재 상황을 공개한다. 그러나 각 당사자는 특정한 정부 사용을 위하여 분배된 주파수에 대한 세부 내역을 제공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
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파를 분배하고 할당하며 주파수를 관리하는 당사자의 조치는 그 자체로 제8.5조(시장접근)에 불합치하는 조치는 아니다. 이에 따라, 각 당사자는 공중 통신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의 수를 제한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전파 및 주파수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적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다만, 그 당사자는 제8장(서비스 무역)의 그 밖의 규정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한 권리는 현재 및 미래의 수요와 전파의 이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주파수 대역을 분배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

4. 상업 통신 서비스용으로 전파를 분배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경쟁 촉진을 포함하여 공익을 고려하는 개방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의존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각 당사자는, 적절한 경우, 상업적 지상 통신 서비스용으로 전파를 할당할 때 시장에 기초한 접근방식에 일반적으로 의존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이와 관련하여, 각 당사자는 상업용 전파를 할당하기 위해서, 적절한 경우, 경매, 행정적 유인 가격 책정 또는 비면허 사용과 같은 메커니즘을 사용할 수 있다.

번호

5. 각 당사자는 자신의 영역에 설립된 다른 당사자의 공중 통신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에게 전화번호에 대한 접근이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부여되도록 보장한다.

제16조

투명성

1. 각 당사자는 자신의 통신규제기관이 법 또는 규정안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경우, 그 기관이 자신의 영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른 당사자의 공중 통신망 또는 서비스 관련 공급자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각 당사자는 공중 통신망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에 대한 다음을 포함하는 관련 정보가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가. 서비스 효율 및 그 밖의 조건

나. 그러한 망과 서비스와의 기술적 인터페이스의 규격

다. 그러한 접근 및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표준의 준비 및 채택을 담당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

라. 단말장치 또는 그 밖의 장비를 부착하기 위한 조건, 그리고

마. 통보 또는 면허 요건이 있으면, 그러한 요건

제17조 국제기구와의 관계

당사자들은 통신망 및 서비스의 국제 호환성 및 상호 운용성을 위한 국제 표준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국제전기통신연합과 국제표준화기구를 포함하여, 관련 국제기구의 작업을 통하여 그러한 표준을 증진할 것을 약속한다.

제18조 국제 해저 케이블 시스템

당사자가 자신의 영역의 공중 통신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공중 통신망 또는 서비스로서 국제 해저 케이블 시스템의 운영을 승인한 경우, 그 당사자는 그러한 공급자가 다른 당사자의 공중 통신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에게 국제 해저 케이블 시스템에 대한 접근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대우를 부여하도록 보장한다.^{8, 9, 10}

⁸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는 국제 해저 케이블 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제공되는 지점을 결정할 수 있다.

⁹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는 당사자가 공중 통신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면허 요건을 포함하는 관련 조치를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이 조에 따른 그 당사자의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

¹⁰ 베트남의 경우,

- 1) 이 조는 자신의 영역 내 국제 해저 케이블 육양국에만 적용된다.
- 2) 이 조는 자신의 영역의 육양국을 포함하는 국제 해저 케이블 시스템을 소유하거나 통제하거나 운영하는 지배적 사업자에게만 적용된다.
- 3) 자신의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통제하거나 운영하는 국제 해저 케이블 육양국의 설비병설은 물리적 설비병설을 제외한다. 그리고
- 4) 이 조는 베트남이 공중 통신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면허 요건을 포함하는 관련 조치를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국제 해저 케이블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막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

제19조 망 요소 세분화

각 당사자는 자신의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을 위한 망 요소에 대한 접근을 세분화에 기초하여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한 조건으로 제의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당사자는 자신의 영역에서 이용 가능하게 하도록 요구되는 망 요소와 그러한 요소를 획득할 수 있는 공급자를 자신의 법과 규정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¹¹

제20조 전주, 관로 및 도관에 대한 접근

1. 각 당사자는 자신의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그 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다른 당사자의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에게 그 당사자가 결정한, 지배적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전주, 관로, 도관 또는 그 밖의 구조물에 대한 접근을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전제로 시의적절하게 그리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이고 투명한 조건과 요율로 제공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당사자는 자신이 제1항에 따라 접근을 제공하도록 자신의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전주, 관로, 도관 또는 그 밖의 구조물을 자신의 법과 규정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당사자는 이러한 결정을 할 때, 그러한 접근의 부족에 따른 경쟁적 효과,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러한 구조물이 경제적으로 또는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는지 여부 또는 그 밖의 특정한 공익 요인을 고려한다.

제21조 기술 선택의 유연성

1. 당사자는 공중 통신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가 그들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기술을 선택할 유연성을 갖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¹¹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는 제 3 조(규제에 대한 접근방식)에 합치되게 이 조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공중 통신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그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제한하는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치는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안되어야 하고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애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입안, 채택 또는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제22조

국제 모바일 로밍

1. 당사자들은 당사자들 간 무역 성장을 촉진하고 소비자 복지 향상에 일조할 수 있는 국제 모바일 로밍 서비스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효율 증진에 대하여 협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당사자는 국제 모바일 로밍 서비스에 대하여 투명성과 경쟁을 제고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다.

가. 소비자가 소매 효율에 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그리고

나. 소비자가 다른 당사자 영역으로부터 한쪽 당사자 영역을 방문할 때 자신이 선택한 기기를 이용하여 통신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로밍에 대한 장애를 최소화한다.

3. 당사자들은 어느 당사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경우, 상업적 약정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국제 모바일 로밍 효율에 대하여 경쟁의 촉진을 선택할 수 있거나 합리적인 효율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매나 소매 국제 로밍 서비스 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의 채택 또는 유지를 선택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당사자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른 당사자들과의 약정 체결을 포함하여 그러한 조치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러한 당사자들과 메커니즘에 대하여 협력하고 이행할 수 있다.

4. 당사자(이하 이 항에서 “제1당사자” 라 한다)가 도매나 소매 국제 모바일 로밍 서비스 효율이나 조건을 규제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제1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이하 이 항에서

“제2당사자”라 한다)의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가, 제2당사자가 제1당사자와 두 당사자의 공급자에 대하여 도매나 소매 국제 모바일 로밍 서비스 효율이나 조건을 상호 규제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제1당사자 영역에서 로밍을 하는 고객에 대하여 도매나 소매 국제 모바일 로밍 서비스의 규제되는 효율이나 조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¹² 제1당사자는 제2당사자의 공급자에게 그러한 효율 또는 조건에 접근하기 위한 조건에 대한 합의에 이르기 위하여 상업적 협상을 충분히 이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5. 제4항에 따라 도매나 소매 국제 모바일 로밍 서비스의 규제되는 효율이나 조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당사자는 국제 모바일 로밍 서비스에 대하여 제8.6조(최혜국 대우), 제4조(접근 및 이용) 및 제7조(지배적 사업자에 의한 대우)를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6.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자가 국제 모바일 로밍 서비스 효율이나 조건을 규제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제23조

통신 분쟁의 해결

1. 각 당사자는 자신의 법과 규정에 따라 다른 당사자의 공중 통신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이 부속서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신의 통신규제기관 또는 분쟁해결기관에 시의적절하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2. 각 당사자는 자신의 관련 통신규제기관의 최종 판정 또는 결정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모든 공중 통신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자신의 법과 규정에 따라 그러한 판정 또는 결정

¹²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가. 어떠한 당사자도, 어떠한 국제 무역 협정의 최혜국 규정 또는 통신에 특화된 비차별 규정에 따라 제1당사자에 의하여 자신에게 부담되는 의무에만 기초하여, 이 조에 따라 제공되는 도매나 소매 국제 모바일 로밍 서비스의 규제되는 효율이나 조건에 대한 접근을 자신의 공급자를 위하여 구하거나 획득할 수 없다.

나. 제1당사자에 의하여 규제되는 효율이나 조건에 대한 접근은 규제되는 효율이나 조건이 약정에 따라 상호 규제되는 것과 합리적으로 상응하는 경우에만 제2당사자의 공급자에게 이용 가능하다. 제1당사자의 통신규제기관은,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효율이나 조건이 합리적으로 상응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 각주의 목적상, "합리적으로 상응하는 효율이나 조건"이란 관련 공급자들이 그러하다고 합의한 효율이나 조건 또는,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제1당사자의 통신규제기관이 그러하다고 결정한 효율이나 조건을 말한다.

에 대한 재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3. 어떠한 당사자도, 자신의 관련 기관이 달리 판정하지 않는 한, 재심사 신청이 자신의 통신규제기관의 판정 또는 결정을 준수하지 않는 근거를 구성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